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제 정	:	2011. 4. 26.
개 정	:	2013. 11. 1.
개 정	:	2020. 11. 27.
개 정	:	2021. 4. 28.
개 정	:	2021. 12. 17.
개 정	:	2024. 6.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와 외국대학간의 복수학위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복수학위제” 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 간에 체결된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본교 및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받아 양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각 대학의 명의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7.>
- ② “본교의 복수학위생” (이하 “복수학위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학위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본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
- ③ “외국대학의 복수학위생” (이하 “외국인 복수학위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학위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본교로 파견된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장 복수학위생

제3조(수학기한) ① 복수학위생은 반드시 지정된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복수학위제의 수학기간은 본교와 외국대학 간의 협약에 따른다. 단, 졸업학기는 본교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 ③ 수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원을 본교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제4조(자격) 복수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외국대학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를 경우는 상기 자격요건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개정 2020. 11. 27., 2021. 4. 28.>
2. 전체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개정 2020. 11. 27.>
3. 본교에서 요구하는 해당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을 갖고 있는 자 (최소 英: 토플 IBT 80점

이상, 中: 신HSK 5급 200점 이상, 日: JPT 525점 이상 또는 JLPT N2이상) 단, 해외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개정 2020. 11. 27., 2021. 4. 28.>

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6.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개정 2021. 4. 28.>
7. 삭제 <신설 2020. 11. 27., 2021. 4. 28., 2024. 6. 20.>

제5조(신청) 복수학위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복수학위 지원 신청서 <개정 2020. 11. 27.>
2. 복수학위 수학계획서 <개정 2020. 11. 27.>
3.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4. 해당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표
5. 기타 필요서류

제6조(선발) ① 세부 선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개정 2020. 11. 27.>

구분	선발기준
서류심사(50%)	총 평점평균, 학점, 해당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 기숙사 상·벌점, 본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면접(50%)	어학능력, 지원동기, 학업계획, 인성 및 태도

②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제7조(등록 및 장학지원) ① 복수학위생의 등록금 및 장학지원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 ② 복수학위생은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복수학위 협정내용에 따라 등록을 하면 본교의 수강 신청 및 등록 학기로 인정한다. <개정 2020. 11. 27.>
- ③ 복수학위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본교 및 외국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0. 11. 27.>
 2. 2년(4학기)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0. 11. 27.>

제8조(복수학위 운영) ① 복수학위생의 선발, 이수완료 등이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학적처리 한다. <개정 2020. 11. 27.>

- ② 복수학위생은 파견기간 동안 중도포기 및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학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대외교류위원회에서 복수학위생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0. 11. 27.>
- ③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 ④ 복수학위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외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4. 28.>
- ⑤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4. 28.>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신설 2021. 4. 28.>
- ⑦ 대외교류위원회는 복수학위생의 자격 유지 여부 판단,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심의한다. <신설 2021. 4. 28.>

제9조(교육과정의 이수) 복수학위생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에 대하여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기 시작 후 1개월 내에 수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 제10조(학점인정)** ① 복수학위생은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학대학 학기 종료 후 취득학점인정청원서 및 외국대학의 원문 및 영문성적증명서 각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성적을 처리한다. <개정 2020. 11. 27.>
- ② 삭제 <2020. 11. 27.>
 - ③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졸업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 ④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5조(학기당 이수학점) 및 학사내규 제60조(계절학기) 제3항을 예외로 적용하여 이수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21. 12. 17.>
 - ⑤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환산할 경우 학점수 및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 12. 17.>

- 제11조(학위수여)** ①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교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단, 복수학위생이 본교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파견된 외국대학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 ② 학사일정의 차이나 외국대학의 학내 사정 등의 문제로 성적표 발송이 지연되어 본교의 졸업사정 마감 이후에 성적이 제출된 경우 다음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7.>

제3장 외국인 복수학위생

제12조(자격) 복수학위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선발하여 파견된 자.

제13조(등록 및 운영) 외국인 복수학위생의 본교 수학기간 동안의 등록 및 체제에 필요한 제경비는 복수학위제 협정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 11. 27.>

제14조(학점인정) 외국인 복수학위생의 학기당 학점인정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

제15조(학위수여) 외국인 복수학위생이 본교 총장명의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7.>

1. 본교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 2020. 11. 27.>
2. 전체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중 전공학점은 전공최소이수학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4. 기타 본교의 졸업요건 중 영어인증제 합격, 골드 취득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1. 27.>

제16조(규정준수) ① 복수학위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7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본 규정은 2011년 4월26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4조(자격)7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